

제215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 : 반감기를 사는 사람들 : 일본 원폭피폭자원호정책의 전개와 '피폭'의 경계

강사 : 오은정 (吳殷政), 서울대학교 인류학 박사

시간 : 2017. 11. 14. 화. 12:00 - 14:00

장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동) 102호

2017년 11월 14일(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동) 102호에서 제215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약 15명의 대학원생과 연구소 교수진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반감기를 사는 사람들: 일본 원폭피폭자원호정책의 전개와 '피폭'의 경계'라는 주제로 오은정 서울대학교 인류학 박사가 강연을 진행하였다. 오은정 박사는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후, 환경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인류학 박사이다.

'반감기(半減期)'는 방사선 물질이 붕괴되어 나오는데,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오은정 박사는 원폭 피해자들도 그렇지만 20세기 세계의 핵 정치에 얽혀 들어 있는 우리 모두 반감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지었다고 한다. 한편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후 오은정 박사는 현지조사를 위해 일본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아무도 '원폭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피해자'라는 용어 자체보다는 '피폭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被爆者'는 사전적 의미로는 '원자폭탄 혹은 그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을 뜻하고,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폭격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가리켰다. '被曝者'나 被ばく者は 방사성핵종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라는 의미이다. '原爆體驗者'는 일본정부로부터 원폭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 받지 않았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시 외곽에서 원폭투하 당시 떨어진 낙진을 맞아 방사선의 영향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이들을 가리키고, '原爆被害者'는 피폭자수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나 가족을 원폭으로 잃은 피폭 당하지 않은 유족이나 고아 등의 관계자들도 포함해 원폭에 의한 피해자 전체를 모임 활동의 대상으로 한다.

피폭자라는 단어 자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대 초반까지는 원폭 피해자들조차도 스스로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때는 희생자, 부상자, 중상자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앞에 '원폭'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으면 당시에 원폭으로 당한 것인지 다른 피해를 입은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 후 1954년 3월 1일 미국의 마셜군도 비키니환초 수소폭탄 실험으로 일본 어부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을 계기로 미국에 보상 요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원폭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하므로 특별 취급을 해서 보상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여론이 강화되고 시위들이 점차 반미성향으로 변하게 되자, 1957년 정부는 법률로 피폭자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키니 피해(ビキニ被災) 이후 일본에서 피폭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다른 일반 공습 피해자들과 다를 것 없다고 취급했었는데 이후 '이 사람들은 방

사능 피해자이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구호해야 한다'고 변화하게 된다. 이것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서 '원호'라는 말이 나온다.

1968년에는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원폭 특별조치가 마련된다. 리사 요네야마(Lisa Yoneyama, 1999)는 피폭자라는 단어 자체가 제도적 차원과 사회 운동적 차원의 담론 결합으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표상이 된 만큼이나 그것이 의료화 되고 제도화된 국가 담론 속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된 측면을 만들어냈다고 보았다. 오은정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왜 방사능만의 피해였을까?' 그리고 만약 방사능의 피해라는 것이 피폭자를 규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자격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확정적이고 경계가 뚜렷하게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었는지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는 여기서 이 일면적인 방사능의 피해라는 것으로 규정된 피폭자라는 용어가 오히려 일본의 피폭자원호정책 상의 법과 행정적 측면에서 완전하게 완결된 적이 없는 개념, 즉 제도적 측면에서 끊임없이 경계를 새로이 짓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방사능의 피해에 대한 과학연구와 정치, 행정 등이 상호작용해온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1945년 9월 14일 일본학술회의 원폭상해조사를 통해 의학적 영향, 건물 손상, 열 손상, 대기효과, 식물 및 동물 영향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때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협력적으로 조사를 하였다. 특히 미국은 원폭으로 인해 실제 도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이것을 떨어뜨렸을 때, 시민들을 어떤 식으로 방어시킬 것인지 조사를 하였다.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폭 상해 조사 위원회라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지금은 방사선영향연구소로 이름 바뀌었다. 이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방사선 방어학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연구소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연구가 수명조사집단연구(Life-Span Studies)였다. 원폭이 떨어졌을 당시 몇 킬로 내에 있던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중요한 것은 NO Treatment Policy이다. 즉,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것이다. 원호나 구호와 같은 조치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피해에 관한 데이터는 수집한 것이다.

한편 히로시마 원폭 사건에는 한국인 피해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해방 직후 한국에 와서 정부, 미국, 일본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지만 모두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진두라는 사람이 1970년 12월에 일본 사가(佐賀)현으로 밀입국하여 체포 당해 수송소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후쿠오카 현을 상대로 피폭자건강수첩을 신청하였다. 당시 원폭 의료법의 대상이 되려면 피폭자건강수첩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1972년 7월 14일 각하되었다. 그 해 10월 2일 일본 시민 단체들이 그를 도와서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 각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1978년 3월 30일 최고 재판소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바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먼저 '원폭피폭자대책기본문제간담회'를 발족하였다. 소위 명망가들을 불러 놓고 원폭피폭자 대책의 '기본이념'에 대해 자문하였다. 이것을 통해 원폭피해자의 희생은 특수성을 갖는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원폭피폭자에 대해 "넓은 의미"에 있어서 국가보상의 견지에서 피해의 실태에 대응하는 적절 타당한 조치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994년 12월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그리고 피폭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다음과 같이 내려졌다. 1) 폭심지 내에서 4KM내에 들어갔던 '직접피폭자'. 2) 2주 안에 이 구역 안에 들어갔던 '입시피폭자'. 3) 이 당시에 이 안에 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를 도와주었던 '구조피폭자' 4) 피폭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사람의 당시 태아였던 '태내피폭자'.

그러나 방사선 영향으로 나타나는 각종 장애에 특수한 양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으니 이것은 원자폭탄의 상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폭 투하 직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이루어진 여러 과학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실제 인체영향을 생물학적으로 식별하는 것은 켈로이드와 같이 외상을 통해 진단이 가능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 혹은 무의미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 정책의 장에서 피폭자라는 범주로 포함되는 자격의 통제, 즉 피폭자를 판별해 피폭자건강수첩을 발급하는 절차에서 기억 그리고 그것의 발화된 형태로서의 문서화된 진술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하지만 피폭자의 통제 과정에서 기록과 문서, 기억이 중요한 매개가 된 점이 피폭자 범주의 경계를 구성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과학 연구의 무용(無用)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생존자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과학 연구들은 방사능의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주제에 있어 고정되기 보다는 불안정적이어서 완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완결되지 않은 과학연구에 기반을 두어 제도화된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행정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원폭피해자 자신들의 신체와 기억, 그리고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연구자의 다음 질문을 푸는 데에도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히바쿠샤' 그리고 '유일피폭국'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정치적 효과에 관한 것이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히바쿠샤라는 용어는 다른 여하한 성격의 용어를 배제시키고 국가가 선택한 하나의 배타적 법적 용어이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의 정치 및 정책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순응하는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히바쿠샤 그리고 이후에 '유일피폭국'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본 정부가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들의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수단을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그 안에 존재하는 모순을 어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지기도 했다.

<토론>

질문 : 발표자님께서서는 일본 원폭 피해자들이 특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 : 이것은 개인이 판단을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사실은 원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 원폭 피해자들도 맨 처음에는 미국에 소송을 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에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미국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전쟁 피해에 대해서 누구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 : 원래 피폭자를 특별한 전쟁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1960~70년대가 되면서 바뀌잖아요. 이것은 당시 분위기가 바뀐 것인지, 과학적 발견들이 있어서 이것은 특수한 피해다라는 인식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요인이 있었는지 그 맥락이 궁금합니다. 맥락 안에서 왜 인식적 차이가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 :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당시에 국가 보상적 배려라고 하는 이념이 들어간 것은 일본의 패착 같은 것입니다. 처음 이것은 사회복지법으로 됐습니다. 일본에서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은 국적과 관계 없이 거주관계를 가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진두라는 사람이 불법이긴 하지만 밀입국을 해서 후쿠오카 수용소에서 소송을 했을 때, 거주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본 재판부에서 피폭자 건강수첩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던 것은 그 때 당시 과학적 연구가 발견되었다기 보다는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처지가 굉장히 열악했고, 당시 일본 시민단체들이 많이 싸워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법적으로 원폭피해라는 것이 특별한 피해라고 확정된 것은 70년대 후반 최고재판에 의해서 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일 피폭국' 이란 말은 대략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궁금하고, 사람들 사이에 히로시마 원폭에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한 전쟁 피해라는 인식은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 : 그것은 비키니 피재 이후부터 형성됩니다. 히로시마 원폭이 제1의 피해, 나가사키가 제2의 피해, 후쿠류마가 제3의 피해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계 '유일 피폭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정부에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단체들이 먼저 국가화된 담론들을 이야기 하면서 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비키니 피재 이후 방사능 피해를 국가화하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도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질문 : 저는 원폭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하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쟁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이 보상을 못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를 넓히고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하게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회적 국가적 권력에 의해서 개인이 희생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후 대응에 대해서 다른 비슷한 의제들과 연계를 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 :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원래 복구한다는 의미인데, 국가적으로 보상은 금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폭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국제정치, 외교분석 등 담론 분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작은 수준에서 하는 것, 그 사람들의 이야기 즉, 역사를 남기는 것도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